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실(시정본관 3층) 담당 김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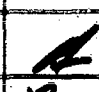


문서번호 법무 11010 - 62

시행일자 1996. 4. 1.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재계장			
기안	김철수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예규안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예규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

첨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618 호 2부. 끝.

서울특별시

(제3안)

수신 농수산유통과장

제목 예규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

가. 발령예정일 : 1996. 4. 20.

첨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618 호(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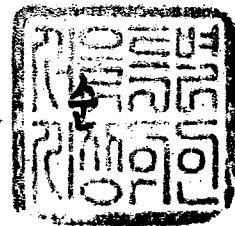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장 조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하여 출하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하손실보전금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동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3항의 규정과 농림수산부의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제 운용지침에 의거 도매시장내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농수산물의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제를 실시코자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도매인이 월간최저거래기준에 3개월 연속 미달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의 규정과 같이 업무정지 10일로 변경 (안 제22조).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0일

나. 차상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3조).

- 사장이 도매시장 거래여건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

다. 출하자가 도매법인에 위탁한 물품이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출하손실보전금 관련규정 신설(안 제46조의2).

(1) 출하손실 보전금 적립기관 : 도매법인

(2) 적립금액 :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3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1,000만원으로 함

(3) 관리 : 도매법인별로 별도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함

(4) 용도 :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에 사용 금지

(5) 적립금액 보충 : 사용할 경우 그 달 말일까지 동액수를 보충 적립

라.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제 시행근거 신설(안 제51조의2).

(1) 시행목적

(가) 무, 배추등의 비포장으로 인한 도매시장 쓰레기 발생을 억제

(나) 농수산물 표준규격출하 촉진

(2) 시행시기 : 1995. 6. 1 부터

(3) 징수 대상품목 : 배추, 무, 양배추, 마늘, 대파, 양파

(4) 징수 대상자

(가) 대상품목의 포장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출하한 자

(나) 시장내에서 다듬기, 재포장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

-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등

(5) 부담금 산정 방법

(가) 포장규격위반 출하자 : 출하물량(톤) × 품목별 요율(원/톤)

① 품목별 요율

품	목	요 율 (원/톤)
마	늘	5,000
배	추	3,000
무	양배추	700
대	파	500
양	파	400

(나) 다듬기, 재포장으로 쓰레기를 발생한 자 : 매 발생행위별로 사장이 산정 하되 최고한도를 5만원으로 함

(6) 부과 및 징수

(가) 사장이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

(나)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하중지 또는 업무정지등 행정처분

(다)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는 도매법인에서 대행

= 부담금 징수액의 5%를 도매시장법인에게 필요경비로 지급

(7) 부담금 사용 :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공사 사장이 집행

(가) 포장재 지원사업 또는 포장재 구입지원사업

(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시설개선·장비구입·교육 연구사업등

(다) 기타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수산부류 정가·수외매매품목 지정(별표5).

(1) 수산부류 : 기지정(95.7.1)한 품목 규정

바. 수산및 육산부류 거래실적 보고양식 신설(별표 제25의2호, 별표 제25의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업무정지 15일” 을 “업무정지 10일” 으로 한다.

제43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매시장내 거래여건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등 경매절차를 달리 할 수 있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출하자 손실보전금) ①법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도매법인이 출자에게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은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3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②도매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 이라 한다)을 별도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도매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47조제2항중 “별지 제25호와 제26호 서식” 을 “별지 제25호, 제25의2호, 제25의3호와 제26호 서식” 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쓰레기유발부담금) ①사장은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법인·도매시장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용기등 포장규격기준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사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

품	목	요	율 (원/톤)
마	늘		5,000
배	추		3,000
우	양 배 추		700
대	파		500
양	파		400

③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 시장내에서 다듬기·재포장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매 발생행위별로 사장이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

④부담금은 사장이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하중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부담금징수액의 5% 이내에서 필요경비를 도매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사장은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되 제1호의 사업에 부담금총액의 50%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출하자나 출하자단체에 대한 포장재지원·포장재구입지원사업
2.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시장시설개선·장비구입·교육 연구사업
3. 기타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부담금의 부과·징수·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의2호 서식) 및 (별지 제25의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정가 또는 수익매 품목

부 류 별	품 목
과 실 류 (7)	버찌, 산딸기, 머루, 야자, 건포도, 아몬드, 코코넛
채 소 류 (15)	* 건고추, 아욱, 근대, 우엉, 연근, 갓, 취나물, 고사리, 마른고사리, 고구마줄기, 토란대, 고구마순, 무말랭이, 호박고지, 박고지
활 · 선어류(13)	메기, 미꾸라지, 붕어, 가물치, 황어, 송어, 민물돔, 도루묵, 망둥어, 볼락류, 준치, 농성어, 밴댕이
패류, 기타 (33)	문어, 홍합, 등족, 개랑조개, 맛, 소라, 백합, 가무락, 새조개, 피조개, 대합, 재철, 고동, 보리새우, 닭새우, 낙지, 쭈꾸미, 갑오징어, 해파리, 꿀뚜기, 한치, 해삼, 미더덕, 성게, 다시마, 미역, 톳, 말, 새우젓, 멸치젓, 명란젓, 참란젓, 키조개
건 어 류 (7)	건미역, 굴비, 다시마, 뱀어포, 쥐치포, 건새우, 건홍합

(별지 제25의2호서식)

거래실적보고서

(도매시장법인명)

(년 월 일)

부류	품목	거래실적(당일)		상장경매실적		거래실적(누계)		비고
		물량 (Kg)	금액 (원)	물량 (Kg)	금액 (원)	물량 (Kg)	금액 (원)	
합계								
선 어 류	고등어							
	명태							
	갈치							
	꽁치							
	조기							
	삼치							
	대구							
	입연수어							
	참어							
	병어							
	아귀							
	가자미							
	진갱이							
	장어							
	홍어							
	송어							
	복어							
	돔							
	넙치							
강달이								
방어								

부류	품 목	거래실적(당일)		상장경매실적		거래실적(누계)		비 고
		물 량 (Kg)	금 액 (원)	물 량 (Kg)	금 액 (원)	물 량 (Kg)	금 액 (원)	
선 어 류	민 어							
	우 렵							
	농 어							
	징어리							
	눈물대							
	적 어							
	활 어							
	기타어류							
	소 계							
패 류	굴							
	바지락							
	고 막							
	홍 합							
	피조개							
	동 죽							
	맛							
	진 북							
	갯고동							
	소 라							
	굴뱅이							
	우렁이							
	가 재							
	꽃 게							
새 우								
오징어								

부류	종 목	거래실적(당일)		상장경매실적		거래실적(누계)		비 고
		물 량 (Kg)	금 액 (원)	물 량 (Kg)	금 액 (원)	물 량 (Kg)	금 액 (원)	
패 류	한 치							
	꿀뚜기							
	낙 지							
	문 어							
	쭈꾸미							
	미더덕							
	해파리							
	해 삼							
	섬 게							
	기타패류							
	소 계							
건 어 류	김							
	건멸치							
	건미역							
	건명태							
	코달이							
	양미리							
	건오징어							
	염잠미역							
	기 타 건어류							

(별지 제25의3호서식)

거래실적보고서

(도매시장법인명)

(년 월 일)

구분	품 목	거래실적(당일)		상장경매실적		거래실적(누계)		비 고
		물 량 (Kg)	금 액 (원)	물 량 (Kg)	금 액 (원)	물 량 (Kg)	금 액 (원)	
합 계	계							
	소							
	돼 지							
국 산	계							
	소							
	돼 지							
수 입	계							
	소							
	돼 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2조 (최저 거래금액) ① (생략)</p> <p>②시장은 중도매인이 전항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주의·경고·업무정지 및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단, 통일처벌이 최근 1년간 3회째인 경우에는 1단계 상위 처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월 미달 : 주의 2. 2개월 연속미달 : 경고 3. 3개월 연속미달 : <u>업무정지 15일</u> 4. (생략) <p>③ (생략)</p> <p>제43조 (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설></p> <p style="padding-left: 20px;">1. ~5. (생략)</p> <p><신설></p>	<p>제22조 (최저 거래금액)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u>업무정지 10일</u> 4. (현행과 같음) <p>③ (현행과 같음)</p> <p>제43조 (경매절차)</p> <p style="padding-left: 20px;">... <u>다만, 도매시장내 거래여건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등 경매절차를 달리 할 수 있다.</u></p> <p style="padding-left: 20px;">1. ~5. (현행과 같음)</p> <p>제46조의2 (출하자 손실보전금) ①법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도매법인이 출자에게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은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3 이상으로 하되, 그 <u>최저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47조 (유통정보 공개등) ① (생략)</p> <p>②도매법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등을 기재한 별지 제25호와 제26호 서식의 거래보고서를 익일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②도매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 이라 한다)을 별도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의의 응도로 사용할 수 없다.</p> <p>③도매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적립하여야 한다.</p> <p>④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p> <p>제47조 (유통정보 공개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별지 제25호, 제25의2호, 제25의3호와 제26호 서식.....</p> <p>제51조의2 (쓰레기유발부담금) ①사장은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법인·도매시장공판장·</p>

현행	개정안												
	<p>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 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용 기동 포장규격기준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사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901 1046 1474 1437"> <thead> <tr> <th>품목</th> <th>요율 (원/톤)</th> </tr> </thead> <tbody> <tr> <td>마늘</td> <td>5,000</td> </tr> <tr> <td>배추</td> <td>3,000</td> </tr> <tr> <td>무·암배추</td> <td>700</td> </tr> <tr> <td>대파</td> <td>500</td> </tr> <tr> <td>양파</td> <td>400</td> </tr> </tbody> </table> <p>③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시장내에서 다듬기·재포장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매 발생행위별로 사장이 산정하되 그 최고 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p>	품목	요율 (원/톤)	마늘	5,000	배추	3,000	무·암배추	700	대파	500	양파	400
품목	요율 (원/톤)												
마늘	5,000												
배추	3,000												
무·암배추	700												
대파	500												
양파	400												

현행	개정안
	<p>④부담금은 사장이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하증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부담금 징수액의 5% 이내에서 필요경비를 도매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⑥사장은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되 제1호 제1호의 사업에 부담금총액의 50%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하자나 출하자단체에 대한 포장재 지원·포장재구입지원사업 2.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시장시설개선·장비구입·교육 연구사업 3. 기타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⑦부담금의 부과·징수·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p>